

[수정안 포함]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사용료) 관외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총수입액(에메엑포함)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95
의 결 년 월 일	93. 9. 10 (제22회)

제출년월일 : 1993. 9. 9

제 출 자 : 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안일자 : 93. 8. 30
- 나.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 다. 회부일자 : 93. 9. 9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위생과장 이광양
- 나. 제안이유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92. 12. 21)과 식품위생사무 질의회신('93. 8. 2) 결과 식품접객업 관련업무가 도지사 권한 사무에서 고유권한 사무로 변경되어
- 현재 구 내부위임으로 업무처리중인 식품접객업 관련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사항을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위임 시키는 사항임.

3. 질의 및 답변내용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법적으로 권한위임이 가능한지 • 권한위임과 내부위임 사항의 차이점은	• 권한위임한다 하여도 법의 지촉이 없음. • 권한위임은 모든 허가사항이 위임되는 기관의 기관장 명으로 허가하는 사항이고 내부위임은 허가사항이 상급기관 의장 명의로 허가되는 사항이며 일종의 대리업무추진을 한다고 할 수 있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 음

나. 찬성토론 : 모든 권한이 하급기관에 많이 내려갈수록 좋은 것으로 내부위임이 권한위임된
현명한 조치임.

5. 수정안 내용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체계적 심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5
의 결	93. 9. 10
년 월 일	(제22회)

제출년월일 : 93. 8. 27

제 출 자 : 부천시장

1. 제안이유

-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92. 12. 21)과 식품위생사무 질의회신('93. 8. 2)결과 식품집객업 관련업무가 도지사 권한사무에서 시장 고유권한 사무로 변경.
- ☐ 현재 구 내부위임으로 업무처리중인 식품집객업 관련업무를 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여 적법한 업무를 수행 하고자함.

2. 주요골자

- ☐ 식품집객업 관련업무의 다음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 식품집객업소의 허가(신고)및 변경허가(변경신고)
 - 식품집객업소의 출입검사 및 수거
 - 식품집객업소의 조건부 영업허가
 - 식품집객업소의 시정명령
 - 식품집객업소의 폐기처분
 - 식품집객업소의 시설개수명령
 - 식품집객업소의 허가취소
 - 식품집객업소의 폐쇄조치
 - 식품집객업소의 청 문
 - 식품집객업소의 과징금 처분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별표1]의 “사회과” 다음에 “위생과”난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사무의구위임 사항

(위생과 소관)

실 과 법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위 생 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식품집객업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 2. 출입검사 및 수거 3. 조건부 영업허가 4. 시정명령 5. 폐기처분 6. 시설개수명령 7. 허가취소 8. 폐쇄조치 9. 청문 10.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2조 법 제17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7조 법 제58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신·구조문 대비표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위 생 과)

현 행					개 정				
일련 번호	위임 사무	단위 사무	근거 법규	수임 기관	일련 번호	위임사무	단위사무	근거법규	수임기관
1	신설				1	식품위생법에의 한권한	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7조 8항의 식품 접객업 1. 허가(신고)및 변경 허가(변경신고) 2. 출입검사 및 수거 3. 조건부 영업허가 4. 시정명령 5. 폐기처분 6. 시설개수명령 7. 허가취소 8. 폐쇄조치 9. 청문 10. 과징금처분	식품위생법 (이하“법” 이라한다) 제22조 법 제17조 법 제23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7조 법 제58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5조	구 청 장